

세 액 공 제 신 청 서

※ 제3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3쪽 중 제1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
------	-----	------	----

① 신청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대표자 성명	④ 생년월일
	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	
(전화번호:)		

② 과세연도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
--------	---------	---------

③ 신청 내용

⑥ 구	⑦ 근거법령	⑧ 코드	⑨ 공제율	⑩ 대상세액	⑪ 공제세액
⑩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	영 제4조제8항 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31			
⑩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6조의4제4항	14Z			
⑩ 대·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	영 제7조의2제4항	14M			
⑩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 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	영 제7조의2제8항	18D			
⑩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7조의2제12항	18L			
⑩ 교육기관 무상 기증 종고자산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7조의2제16항	18R			
⑩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(최저한세 적용대상)	영 제9조제14항	13L			
⑩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(최저한세 적용대상)	영 제9조제14항	10E			
⑩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(최저한세 적용대상)	영 제9조제14항	13M			
⑩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(최저한세 적용제외)	영 제9조제14항	16A			
⑩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(최저한세 적용제외)	영 제9조제14항	10D			
⑩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(최저한세 적용제외)	영 제9조제14항	16B			
⑩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11조제6항	176			
⑩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11조의3제14항	14T			
⑩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11조의4제12항	14U			
⑩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12조의2제5항	18E			
⑩ 소재·부품·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	영 제12조의3제15항	18N			
⑩ 소재·부품·장비 외국법인 등 인수 세액 공제	영 제12조의3제15항	18P			
⑩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	영 제17조제5항	18H			
⑩ 통합투자세액공제(일반)	영 제21조제13항	13W			
⑩ 통합투자세액공제(신성장사업화시설)	영 제21조제13항	13X			
⑩ 통합투자세액공제(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)	영 제21조제13항	13Y			
⑩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22조의11제7항 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8I			
⑩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	영 제22조 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34			
⑩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	영 제22조의2 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77			
⑩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	영 제22조의3 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4A			
⑩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 세액공제	영 제22조의4 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42			
⑩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	영 제22조의5 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36			
⑩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	영 제22조의6 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35			

⑥ 구 분	⑦ 근거법령	⑧ 코드	⑨ 공제율	⑩ 대상세액	⑪ 공제세액
⑬⑩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	영 제22조의8 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4B			
⑬⑪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	영 제22조의9 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8B			
⑬⑫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22조의10제6항	18C			
⑬⑬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	영 제23조제15항부터 제17항까지	14N			
⑬⑭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26조의2제3항	14S			
⑬⑮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	영 제26조의3제6항	14X			
⑬⑯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	영 제26조의3제6항	18J			
⑬⑰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26조의4제17항	14Y			
⑬⑱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26조의5제11항	18A			
⑬㉑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26조의7제10항	18F			
⑬㉒ 통합고용세액공제	영 제26조의8제11항	18S			
⑬㉓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27조의3제3항	18K			
⑬㉔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	법 제30조의2제4항	14H			
⑬㉕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	법 제30조의4제5항	14Q			
⑬㉖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	법 제30조의4제5항	18G			
⑬㉗ 상환대료를 인정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96조의3제8항	10B			
⑬㉘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99조의11제4항	18Q			
⑬㉙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(납세의무자)	영 제104조의5제6항	184			
⑬㉚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(세무법인)	영 제104조의5제6항	14J			
⑬㉛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104조의14제2항	14E			
⑬㉜ 기업의 경기부 실치운영 세액공제	영 제104조의20제5항	140			
⑬㉝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104조의22제3항	14P			
⑬㉞ 대학 맞춤형교육비용 세액공제	법 제104조의18제1항 (2020.12.29.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4I			
⑬㉟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	법 제104조의18제2항 (2020.12.29.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4K			
⑬㊱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 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등 세액공제	법 제104조의18제4항 (2020.12.29.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4R			
⑬㊲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산업자 세액공제	영 제104조의27제3항	18M			
⑬㊳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104조의29제2항	10C			
⑬㊴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	법 제122조의4제3항	14W			
⑬㊵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	법 제126조의7제13항	14V			
⑬㊶ 세액공제 합계		1A3			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방법 및 유의사항

1. 신청 내용 구분별로 ⑨ 공제율란, ⑩ 대상세액란과 ⑪ 공제세액란을 적습니다.
2. ⑨ 공제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습니다.
3. ⑩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공제세액을 적습니다.
4. ⑪ 공제세액란에는 ⑩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공제세액 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.
5.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6.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빈칸에 별도로 적습니다.
7. ⑦ 근거법령란에서 ‘법’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‘영’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을 뜻합니다.

투자자산 명세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과 세 연 도

상호 또는 법인명

사업자등록번호

1.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

- [] 1)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43조(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) [코드 : 131]
- [] 2)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(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)[코드 : 134]
- [] 3)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6(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) [코드 : 135]
- [] 4)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5(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) [코드 : 136]
- [] 5)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2(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) [코드 : 177]
- [] 6)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3(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) [코드 : 14A]
- [] 7)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8(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) [코드 : 14B]
- [] 8)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9(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) [코드 : 18B]
- [] 9)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3조(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) [코드 : 14N]
- [] 10)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4(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) [코드 : 142]
- [] 11)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7조의2제12항(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) [코드 : 18L]
- [] 12)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11(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) [코드 : 18I]
- [] 13)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1조(통합투자세액공제-일반) [코드 : 13W]
- [] 14)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1조(통합투자세액공제-신성장사업화시설) [코드 : 13X]
- [] 15)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1조(통합투자세액공제-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) [코드 : 13Y]

2. 투자자산별 명세

(단위: 원)

[illegible]

첨부서류	1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2에 따른 투자 세액공제 시 첨부서류 -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 확인한 에너지관리 시스템(EMS)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-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고효율인증기자재의 인증서 사본 -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자동절전제어장치의 승인서 사본 2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5에 따른 투자 세액공제 시 첨부서류 -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의 경우 해당 주 무부장관이 지정한 사실과 그 임무를 기재하여 송달한 고지서 사본 - 건축 당시에는 구조 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이 아니었으나,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아 내진보강을 한 시설인 경우 그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 및 확인신청 시 첨부하였던 서류 사본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작성 방법

※ 동 서식의 제4조, 제22조,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, 제22조의8, 제22조의9, 제22조의11은 구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(2021. 2. 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에 따른 조문을 의미합니다.

※ 각 과세연도에 구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(2021. 2. 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조, 제22조,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, 제22조의8, 제22조의9, 제22조의11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7조의2제12항, 제21조제11항, 제23조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.

- "2. 투자자산별 명세"에는 ⑦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투자 자산의 명세를 기재하고, 나머지는 합계에 포함하여 적습니다.
- ① 투자자산 종류란에는 위 "1.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"에서 해당하는 분류번호(숫자 1~15)를 적습니다.
* 예시)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→ 7
- ② 투자자산 소재지란에는 투자한 곳(투자처)의 소재지를 시/도 + 시/군/구 + 읍/면 + 도로명까지 적습니다.
- ③ 투자적격 여부란에는 중고품 여·부, 리스 자산(금융리스 제외) 여부,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여부 등 해당 법령의 요건을 자체 검토하여 적격 여·부를 적습니다.
- ⑦ 투자금액란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을 적습니다. 이 경우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해 각 과세연도마다 공제받는 경우에는 구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(2021. 2. 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고,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.
-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 또는 이자비용을 지급 받거나 용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이나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.

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명세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1. 신청인 현황

① 상호 또는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
③ 과세연도 년 월 일 부터 ~ 년 월 일 까지	④ [] 중소기업, [] 중견기업, [] 일반기업

2. 취득한 기술의 종류

[] 특허권	[] 실용신안권	[] 기술비법	[] 기술
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

3. 기술취득에 관한 사항

① 공통			
가. 국내에서 자체 연구·개발한 특허권, 실용신안권, 기술비법, 기술인지 여부	[] 여	[] 부	
② 취득한 기술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인 경우			
가. 「특허법」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인지 여부	특허번호	취득금액	합계
나. 「실용신안법」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인지 여부	등록번호	취득금액	합계
③ 취득한 기술이 기술비법 또는 기술인 경우			취득금액 합계
가.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	금 액 (원)	기 준	적격 여부
		500억 원 이하	[] 여 [] 부
나. 특허권, 실용신안권, 기술비법, 기술 등 거래 전체의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	금 액 (원)	기 준	적격 여부
		70억 원 이하	[] 여 [] 부
다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·관리 여부			[] 여 [] 부
④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한 중소기업 외 기업			
가. 특허권 등을 양도한 자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	[] 여	[] 부	
나. 특허권 등을 양도한 중소기업의 사업자번호			

작성 방법

※ 각 과세연도에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1조에 따라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세액공제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.

- 취득한 기술의 종류는 ① 「특허법」에 따른 특허권, ② 「실용신안법」에 따른 실용신안권, ③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(공업소유권, 「해외건설 촉진법」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및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합니다)으로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비법 ④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로 구분하여 선택하며, 여러 가지 종류의 기술을 취득한 경우 중복하여 선택합니다.
- 특허번호는 취득한 특허권의 「특허법」에 따른 특허번호를 기재합니다(복수의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", "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).
- 등록번호는 취득한 실용신안권의 「실용신안법」에 따른 실용신안권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(복수의 실용신안권을 취득한 경우 ", "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).
-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은 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의 시작일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기재합니다(매출액은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,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. 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법인의 경우 "0"원으로 기재합니다).